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지원사업 (한국형 Stipend)

및

학생인건비 기관계정 설명회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10. 20/21

목 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요

1. 기관계정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개요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요건
3. 연구개발기관계정과 Stipend 연계모델
4. 연구개발 기관계정과 Stipend 연계 관련 변경사항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안)
6. 우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행(대여-상환)
7. FAQ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개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개요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함
 - 학생인건비 연간 지급 잔액은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 운영목적: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13년부터 시행)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용어
 - 연구책임자계정: 과제단위가 아닌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관리
 - 연구개발기관계정: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학생인건비 관리
 - **균등지급**: 기관계정 책임자(산학협력단장)가 학생연구자에게 기관계정을 통해 균등지급액을 지급(학위과정별 계상기준(석사 220만, 박사 300만)의 20% 이상:석사 44만, 박사 60만)
 -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지급

1. 기관계정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개요

- ✓ 2025.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기관계정 지정
- ✓ 2025. 9. 하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개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1. 기관계정 운영 배경

- 2025. 3. 6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의 일부 금액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 계정을 병행 운영이 필수임
- 기관계정이 있어야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사업(한국형 Stipend)」 신청 자격 충족

2. 연구개발기관계정 시행 개요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산단 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일부를 이체받아 기관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급함
- 기관계정운영 기관은 과기정통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지급하도록 함 (석사 44만원, 박사 60만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1. 사업운영 목적

- ① 연구·학업 전념 위한 이공계 대학원생 최소한의 생활보장 정부재정지원사업
→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이상
- ② 정부-대학-교원 공동 학생연구자 지원체계 보강
→ 대학차원의 학생지원금 지급강화 구조 구축
→ 정부지원금+ 대학자체 재정기여+ 대학 내 자율·책임 관리 통해 기관단위 인건비규모 적정 유지
- ③ 대학차원 학생연구자 지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 전체 산단회계 학생지원금 지원·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이공계 학생연구자 처우관리 고도화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시행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최소 기준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액 부족분을 장려금으로 지원함

2.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지원사업(한국형 Stipend) 지원요건

- 지원 대학원생 요건: 일반대학원 이공계 전일제 연구활동중인 대학원생(재학,수료)
- 산학협력단은 지원 대학원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 명부를 매월 관리 및 점검함

1. 이공계 대학원생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IT공학과	생명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수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식품영양학과
응용물리학과	약학과/제약학과
전자공학과	의류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과
헬스산업학(협동과정)	기후환경에너지학(협동과정)

학적상태: 재학 또는 수료(연구등록)

2. 전일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로 확인(매학기 제출 및 검증 예정)

3. 연구활동

- (현재) R&D 및 용역과제 참여자
 - (과거) 과제 참여이력 & 학위논문연구 수행
 - 신입교원(임용 3년 이내) 연구실 소속 학생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재 과제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 지원 대학원생 중 산단회계 지급 인건비가 기준금액(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부족분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함(대여-상환방식)

사업
핵심관리지표

[초기] 이공계 대학원생 전원 기준금액 보장
[중기] 이공계 대학원생 중 기준금액만 지급자수 점진적 감소
[장기] 이공계 대학원생 평균 지급액 점진적 상향

3. 연구개발 기관계정과 Stipend 연계 모델

- 2025년 9월 1일자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 지정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 11월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 및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행 (시행일부터 지급해야 했던 9월, 10월 지급분은 소급 예정)



- 기관계정 의무이체분 산식: (12.31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균등지급액 기관계정 이체분-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추가 지급액)*0.2
- 스타이펜드 지급액: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기준금액 (석사80/박사110) 대비 총지급액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대여하여 지급

4. 연구개발 기관계정과 Stipend 연계 관련 변경사항

구분	기존	2025_2학기부터 변경사항
운영계정 단위	연구책임자 계정 단위 (단독 운영)	연구책임자 계정 + 기관계정 (병행 운영)
학생인건비계정 잔액 이월 금액의 사용	이월 가능 (연간 수입액의 60%이상 집행 권고 후 남은 잔액 은 제한없이 이월함)	[253 법령개정]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이체·계정대체(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반납) [의무이체사항] 매년 1231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중 일정 금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 책임자 계정 총액의 50% 이상 금액을 이체 또는 집행한 경우 제외 기관계정 의무이체 분 산식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균등지급액 기관계정 이체분-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추가 지급액)*0.2 (책임자 계정 → 기관계정 이체금액 계산 예시) • 2025. 12. 31.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10,000,000원 • 2025. 1. 1.~1231.까지 연구책임자 계정 집행액 8,000,000원 • 기관계정 (의무) 이체 금액 400,000원 = (10,000,000-8,000,000)×0.2
학생인건비 지급액	- 연구책임자가 자율 결정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만 지급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함 ① 기관계정 균등지급: 국가연구과제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에게 최소 기준금액 균등 지급 (균등지급액: 석사44만원/박사60만원) ② 연구책임자 계정 차등지급: 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제외 금액을 학생 참여내역 등 고려 학생별 차등지급 ③ 스타이펜드 장려금 지급: (이공계전일제대학원생) 산단회계 총 지급액과 기준금액 차액 부족분 지원

- 집단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진 협의를 통해 집단연구 과제 책임자 계정에서의 집행비율을 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집행해야함.
- 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기관계정 운영 대상에서 제외됨.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안)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균등지급) 운영방식

구분	내용			
균등지급 개요	기관계정에서 학위과정별 균등한 금액을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			
균등지급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박사 학생연구자 전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균등지급 대상 적용 예외	1. 직장인 학생연구자 2. 학사과정 학생연구자 3.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4. BK21 장학금 수혜자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이공계 대학원생인 학생연구자			
[기관계정] 균등지급금액 책정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고시한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금액의 20% 이상 지급함			
	과정	학사	석사(석박 3학기 이하)	박사(석박 4학기 이상)
	고시기준	월 130만원	월 220만원	월 300만원
	균등지급액	-	월 44만원	월 60만원
균등지급액 예산	•기관계정 예산: 연구책임자계정 이체분+산학협력단 자체기여금+정부 기관계정지원금 •학기별로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액을 이체함 (단,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균등지급액 미만인 경우 잔액 전액 이체 후 기관계정에서 차액을 학생지원함)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균등지급) 및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세부 절차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선발 및 인건비 편성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기관담당자] 학생인건비 대체 및 지급
시 기	매 학기 초(3월/9월)	매 학기 초(3월/9월)	~25일
균 등 지 급	- 기관/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연구자 등록 - 기관계정: 석·박사 월기준금액 20%이상 편성(균등지급분) - 책임자계정: 균등지급액 제외 월 기준금액 100%이내 차등편성	- 연구책임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및 확인 - 학생연구자 동의완료 [기관담당자] 연구참여확약서 승인	- 책임자 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액 학생인건비 대체 - 균등지급액 인건비 지급(매월 25일)
스 타 이 펜 드	[연구책임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신청서, 의무이행확약서(학기 별) 제출 [학생연구자] 전일제증빙, (학위논문작성시) 이전 연구과제참여확인서 제출 [연구관리팀] 증빙 검토 및 승인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확정 [연구관리팀] 지원대상자 부족분 파악하여 기관계정에 스타이펜드분 지급액 입력 [학생연구자:지원대상] 연구참여확약서 재승인	이공계연구생활 장려금 지급 (매월 25일*) *연구참여확약이 지연될경우,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계정 운영

③ 25_2학기 연구개발 기관계정 균등지급과 Stipend 업무추진 일정(안)

일정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운영

10월 말

(균등지급반영)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수정

이공계 대학원생 전체 명부 확보

- 연구관리팀: 기관계정에 학위별 균등지급액 등록
- 연구책임자: 책임자계정 지급금액 재등록 (균등지급 제외)

- 학생연구자: 포털 개인정보동의(학적정보연동)
- 연구관리팀: 대학원생 학적, 산단회계 지급액 파악

11월 초

균등지급액 기관계정 이체

이공계 대학원생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

- 학생연구자: 연구자 사이트에서 재확약
- 연구관리팀: 균등지급액 이체 실행 (책임자 계정 → 기관 계정)

- 연구책임자: 연구생활장려금 대여 신청 (대여신청서, 확약서 등 준비)
- 학생연구자: 지원대상증빙신청(전일제증빙 등)
- 연구관리팀: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위원회 승인 절차

11월
셋째주

학생인건비 지급

스타이펜드분 지급 계획 수립 및 확정

- 학생인건비 (책임자, 기관계정) 확정 후 지급 진행

매월
지급

- 연구관리팀: 스타이펜드 지급계획 등록
- 학생연구자: 연구자사이트에서 확약
- 연구관리팀: 학생인건비 확정 후 지급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

④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예시 (균등지급-차등지급-Stipend 연계)

학위과정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기관계정 균등지급액 (A)*	연구책임자 차등지급액 (B)	학생인건비 (A+B)	[부족분] 장려금 지원금 C-(A+B)	연구생활장려금 기준금액 (C)
석사 (통합 3학기 이하)	220만원/ 월	44만원/월	40만원/월	84만원/월	없음	80만원/월
박사 (통합 4학기 이상)	300만원/ 월	60만원/월	40만원/월	100만원/월	10만원/월	110만원/월

*(A) 균등지급액은 기관계정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학기별로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액을 이체함(단, 균등지급액 금액 미만인 경우 전액 이체 후 기관계정에서 차액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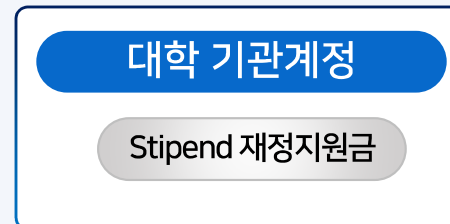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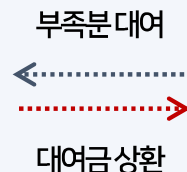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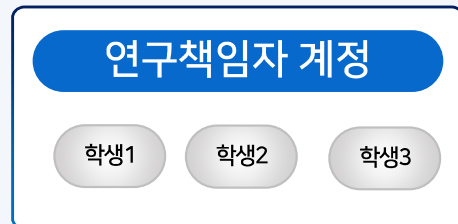
- 기관계정 균등지급액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과기정통부 계산기준 내 차등지급함
- 학생인건비 총 지급액이 연구생활장려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
-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인건비 잔액**을 보유 중인 경우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을 **우선 집행** 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가능

6. 우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행(대여-상환)

우리대학 대여-상환제도 지침



- 대여 대상: 본교 소속 전임교원 중 학생인건비 지급금액 기준 미만 보유중인 교원(단, 임용 3년 이내의 신입교원 우선 배정)
- 대여 기간: 2년(위원회 심의 거쳐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연장 가능)
- 상환의무: 대여기간 만료 전 연구과제 수주 노력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계정 잔액으로 대여금을 상환해야 함
대여기간 만료 전 전액 상환 불가시, 대여금의 최소 25% 이상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를 가짐(위원회 심의 거쳐 상환기간 연장)
- 미상환 시 패널티: 교내 연구비 지원 및 인센티브 혜택에서 제외 등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결정



심의위원회

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학생연구자 선정
연구책임자 및 지원대상자의
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학생인건비 과소계상 방지: **대여금 有 교원: 직접비의 20% 이상 책정 의무 (그 외 교원: 직접비의 10% 책정)**
- 대학원생 선발 규모 관리: **대여금 有 교원: 최근3년 평균 학생대비 5명 초과선발 금지(필수)**
-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학생인건비 지급 우수 연구실 선정 및 학생인건비 추가 지급



우리대학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사업 운영 지침 상 필수 마련 및 관리)

7. FAQ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사전 질문/건의사항

1. 해당 사업이 연구책임자나 학생 연구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 계정에 잔액이 부족할 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균등지급액만큼은 보장이 됩니다. 더불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의 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까지는 지원금 내에서 대여-상환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연구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책임자나 학생연구원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예: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여 신청서, 지도교수 확인서, 의무이행 협약서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지원 대학원생 요건을 확인하는 추가증빙(전일제 여부, 연구활동 여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학생들에게 최소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09.0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11월 지급을 시작하면서 9~10월분은 소급지급 예정입니다.

4.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대여방식 운영시 국비까지 모두 상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원 대학원생 요건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중'이어야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대여-상환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며 대여금 100% 상환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7. FAQ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사전 질문/건의사항

1. 기존의 인건비를 조정하면 안되며, 기관계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인가요?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액을 매학기 초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더불어 연구책임자 계정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계정 재원에서 균등지급액만큼은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계정 운영"이라는 말의 개별 단어들은 모두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을 말합니다. 기관계정은 전문기관의 지원금, 우리대학 자체 지원금, 학생인건비 이자수익, 균등지급 바로이체분 및 의무이체분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3. 아무 과제가 없어서 학생을 못뽑고 있는 교수님들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미 과제를 하면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교수님들께는 너무 혜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우수연구실 기준 (기준금액 초과 지급 및 대상자 수 기준) 정하여 선정된 연구실에는 인센티브(학생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 FAQ

■ 1차 설명회 질문 및 건의사항

1. 학생인건비의 기관계정 의무이체분 계산시 집행금액에 균등지급액 이체분도 포함되나요?

균등지급액 기관계정 이체분도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하여 이체한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산식: (연구책임자계정 잔액-균등지급액 기관계정 이체분-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추가 지급액)*0.2

2. 집단과제(MRC, 글로벌랩 등)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빼는 비율을 정해야 1) 집행률 2)연구수당 비례감액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별도 안내 및 고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집단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교수님의 연구실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해당 비율은 공동연구진 내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관계정 운영 관련 안내 시 전문기관에 확인 후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9~10월의 균등지급액 소급처리는?

9월 1일자 기관계정 시행에 따라 소급처리가 필요하며, 해당 행정처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정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의 확인도 필요하오니 관련 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9월 1일자로 석사과정생/박사과정생 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생들도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균등지급액을 이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석사과정생/박사과정생 장려금 지원사업은 '학생연구자가 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은 균등지급액 대상 및 의무이체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예정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7. FAQ

■ 1차 설명회 질문 및 건의사항

5. 상환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과제 수주후에 학생인건비중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연구계획서의 학생인건비가 실질 지급액보다 초과 계상될 필요가 있을텐데요,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하므로 과제별 계상한 학생인건비의 실지급액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6. 지원금 상환의무 가운데 최소 의무를 지면 계속 대여가 가능한건가요?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대여-상환모델의 경우, 대여기간 만료전에 대여금액의 최소25%이상을 상환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추가 대여가 가능합니다.

7. 대여-상환 모델로 운영되어 상환이 잘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은 계속해서 기관계정에 잔액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추후 활용방안은?

궁극적으로 기관계정의 금액을 활용하여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 확대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8. 현재 학생인건비를 기관계정으로 의무이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50% 이상을 집행해야 하는데, 학생인건비의 집행비율을 33.3%정도로 낮추는 건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기관계정 의무이체분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것으로 추후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수용여부는 불확실함을 안내드립니다.

7. FAQ

■ 2차 설명회 질문 및 건의사항

1.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중 대학원생 5명 초과 선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이공계 대학원의 활성화 및 대학원생 입학 장려하는 측면에서 넉넉하게 5명 초과선발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2. 우수교원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우수 인센티브 대상 교원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인건비를 이미 기준금액만큼 다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화여대의 경우 우수연구교원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연구처와 협의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연구처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교 장학금 제도를 지원받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금액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산단 회계를 통해 지급되는 인건비(또는 BK장학금)만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교 장학금 제도를 지원받는 것은 교비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월별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조교 장학금을 여러명(현실적으로 최대 2명)으로 유연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운영을 변경하면 1인당 지급 장학금을 줄이고, 명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관부서(교무팀, 연구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